

의안번호	제 494 호
의 결	2010년 월 일
연 월 일	(제 289 회)

**충청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0년 4월 6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

## 충청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94
------------	-----

제출연월일 : 2010년 4월 6일

제 출 자 : 충 청 북 도 지 사

### 1. 제안사유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법률제명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되고 조례 개정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 도 조례의 제명 및 새주소위원회 명칭을 개정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제명 “충청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충청북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함.
- “도로명주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 협의대상 도로의 현황 제공에 대한 내용을 법 제8조로 이관하여 삭제 함(안 제3조)
- 2개 이상의 시 · 군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의 설정 등에 대한 내용을 시행령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으로 이관하여 삭제함(안 제4조)
- 도로명의 사용의무 적용시 ‘도로명사업에 의한 도로명 을 법에 의한 도로명’으로 변경함(안 제5조)
- 시장은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물을 제작하여 주민 등에게 배포할 수 있도록 규정 함.(안 제6조)
- 충청북도 ‘새주소위원회’를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명칭변경을 하고 위원회 구성인원을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9조 제1항)
-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법 제22조의2로 이관하여 삭제함.(안 제11조)

### 3. 의안전문 : 붙 임

### 4. 신 · 구조문 대비표 : 붙 임

### 5.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기간 '10. 2. 5 ~ 2. 26)

### 6. 부패영향평가 : 의견없음

### 7. 관계법령 발췌 : 붙 임

## 충청북도 조례 제 호

### 충청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충청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충청북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을 “「도로명 주소법」”으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2장(제3조 및 제4조)을 삭제한다.

제5조의 제목 중 “도로명사업에 의한 도로명”을 “도로명”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도지사”을 “충청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로 “법”을 “「도로명주소법」(이하“법”이라 한다)”이라 하며, 같은 조 단서 중 “도로명사업”을 “법”이라 한다.

제6조 중 “관할 주민”을 “주민 등”으로 한다.

제8조제1항을 같은 조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새주소안내도 부착, 새주소안내 표지판 설치 등 새주소안내 시설”을 “도로명주소 안내도 부착, 도로명주소 안내판 등”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충청북도 새주소위원회 등”을 “충청북도 도로명 주소 위원회 등”으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를 “부위원장은 도로명주소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도로명사업”을 “도로명주소사업”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도로명사업 및 도로 교통분야”를 “도로명주소사업에 관한 학식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①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충청북도 도로명주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6조의 제목 “(규칙)”을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삭제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충청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적용범위)</b> 도로명사업 등에 관하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규칙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p>	<b>제2조 &lt;삭제&gt;</b>
제2장 도로구간·도로명의 조정	제2장 도로구간·도로명의 조정
<p><b>제3조(협의대상 도로의 현황 제공)</b></p> <p>①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영 제6조제5항 및 제7조 제3항과 관련된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는 도로의 현황(명칭, 구간, 폭, 설치·관리자, 관련 시·군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p> <p>②도지사는 제1항의 도로 현황에 관한 자료를 매년 말 기준으로</p>	<p><b>제3조 &lt;삭제&gt;</b></p>

작성하여 작성 기준연도의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 1항의 도로의 현황을 변경하고자 하는 계획이 연도중에 확정 또는 공고되거나 제 1항의 도로의 현황이 통보된 내용과 다른 것을 발견한 때에는 계획이 확정 또는 공고된 날이나 통보된 내용과 다른 것을 발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 2항의 통보를 할 경우에 별지 제 1호 서식에 따라 협의를 신청하도록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제4조(도로구간의 설정 등)** ① 도지사는 관할 시장·군수로부터 영 제 6조제 5항 및 제 7조제 3항에 따라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구간 설정, 도로명의 부여·변경을 위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또는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제 9조에 의한 충청북도 새주소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연장, 폭, 기·종점 및 도로구간에 관한 사항
2. 도로에 대한 도로명의 부여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3. 도로의 도로구간의 설정 및 도로명의

#### 제4조 <삭제>

<p><u>부여·변경에 관한 시장·군수의 의견</u></p> <p><u>4. 도로의 도로구간의 설정·변경</u></p> <p><u>도로명의 부여·변경에 관한 지역적 특성, 역사성, 위치예측성, 도로명 주소의 영속성 등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u></p> <p><u>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p> <p><u>② 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 새주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심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u></p>	
<p><u>제3장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u></p> <p><u>제5조(도로명사업에 의한 도로명의 사용의무) 도지사가 관리하는 모든 도로의 명칭(노선명)은 도로명사업에 의하여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명사업에 의하여 부여한 도로명의 도로구간이 개별 법령에 의하여 개설된 도로의 도로구간을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는 다른 명칭(노선명)을 사용할 수 있다</u></p>	<p><u>제3장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u></p> <p><u>제5조(도로명의 사용의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리하는 모든 도로의 명칭(노선명)은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법에 의하여 부여한 도로명의 도로구간이 개별 법령에 의하여 개설된 도로의 도로구간을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는 다른 명칭(노선명)을 사용할 수 있다.</u></p>
<p><u>제6조(도로명주소의 홍보) 도지사는 법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손수건, 휴대용 화장지, 부채, 자, 저금통, 달력, 접지형 지도, 컴퓨터용 마우스패드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할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u></p>	<p><u>제6조(도로명주소의 홍보) 도지사는 법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손수건, 휴대용 화장지, 부채, 자, 저금통, 달력, 접지형 지도, 컴퓨터용 마우스패드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주민 등에게 배포할 수 있다.</u></p>

<p><b>제8조(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b></p> <p><b>추진)</b> ① 도지사는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촉진을 위해 법 제 22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제반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p> <p>1. 각종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 도시 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 다중이용시설에 새주소안내도 부착, 새주소안내표지판 설치 등 새 주소 안내시설 설치</p> <p>2 ~ 5.(생략)</p> <p>제4장 충청북도 새주소위원회 등</p> <p><b>제9조(위원회의 구성)</b> ① 영 제 25조에 따라 설치되는 충청북도 새주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p> <p>③ (생략)</p> <p>1. 도로명사업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p> <p>2. 도로명사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자</p> <p>3. 충청북도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p> <p>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p>	<p><b>제8조(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b></p> <p><b>추진)</b> 도지사는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촉진을 위해 법 제22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제반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p> <p>1. 각종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 도시 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 다중이용시설에 도로명주소 안내도 부착, 도로명주소안내판 등 설치</p> <p>2 ~ 5.(현행과 같음)</p> <p>제4장 충청북도 도로명주소위원회 등</p> <p><b>제9조(위원회의 구성)</b> ① 법 제 22조의 2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충청북도 도로명주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도로명주소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1. 도로명주소사업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p> <p>2. 도로명주소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p> <p>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p> <p>4. (삭제)</p>
--	--

<p><b>제11조(위원회의 기능)</b>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의 집행계획과 연도별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li> <li>2.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구간의 설정·변경 및 도로명의 부여·변경에 관한 사항</li> <li>3. 도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운영 · 관리에 관한 사항</li> <li>4.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li> <li>5. 그 밖에 도로명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li> </ol>	<p><b>제11조 &lt;삭제&gt;</b></p>
<p><b>제12조(위원회의 운영)</b> ① ~ ③ (생략) ④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p>	<p><b>제12조(위원회의 운영)</b>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lt;삭제&gt;</p>
<p><b>제16조(규칙)</b>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b>제16조(시행규칙)</b>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련법령 발췌

### □ 도로명주소법

**제8조 (도로명부여 등)** ①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의 부여·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기초조사
2. 도로구간의 설정·변경·폐지
3. 도로명의 부여·변경·폐지
4.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5. 기초번호의 부여·변경·폐지
6. 도로명주소기본도의 작성
7. 그 밖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2개 이상의 시·군·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의 경우에는 현황자료 및 시장등의 의견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결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 해당 시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도로구간의 설정 또는 변경
2. 도로명의 부여 또는 변경
3. 기초번호의 부여 또는 변경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그 신청을 받은 도로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현황자료 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 해당 시·도지사와 시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 각 호의 결정사항에 변경요인이 발생하였거나, 2개 이상의 시·도 또는 2개 이상의 시·군·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를 새롭게 확인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⑤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제1항부터 제4항 까지에 따라 도로명(도로구간과 기초번호를 포함한다)을 결정 하거나 결정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시장등은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만을 수렴한다)한 후 제22 조의2에 따른 해당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고시된 도로명주소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해당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해당 도로의 현황과 제2항 각 호의 결정사항을 종합하여 매년 말을 기준으로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도로명주소사업 지원 조례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명 주소를 부여·관리하고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유지관리·손해배상공제가입·활용 및 홍보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다.

**제22조의2(도로명주소위원회)** ① 도로명의 부여·변경, 그 밖에 도로명 주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도로명 주소위원회를, 시·도에 시·도 도로명주소위원회를, 시·군·자치구에 시·군·구 도로명주소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로명주소사업의 추진을 위한 종합계획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도로명주소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3. 도로명주소의 사용을 위한 민간부문 및 공공부문의 활용촉진 등에 관한 사항
4.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도로구간과 기초 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부여·변경에 관한 사항
6.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시·도 도로명주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도의 집행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의 부여·변경에 관한 사항
3. 시·도의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④ 시·군·구도로명주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로명의 부여·변경에 관한 사항
2.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위탁에 관한 사항
3.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 등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각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시·도 및 시·군·구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1조의2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도로에 대한 도로구간 등의 설정 절차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현황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도로구간 설정의 경우: 도로구간의 시작지점 · 끝지점 · 중심선 및 관할 행정구역
2. 도로구간 변경의 경우: 변경 전 · 후의 도로구간의 시작지점 · 끝지점 · 중심선 및 관할 행정구역
3. 도로명 부여의 경우: 예비도로명 및 그 부여 사유
4. 도로명 변경의 경우: 변경 전 · 후의 도로명과 그 변경 사유, 변경후 도로명의 부여 사유
5. 기초번호 부여의 경우: 기초간격 및 기초번호
6. 기초번호 변경의 경우: 변경 전 · 후의 기초간격 및 기초번호

② 시장 등으로부터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 · 도지사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도로를 관할하는 다른 시 · 군 · 구(이하 "인접 시 · 군 · 구"라 한다)의 시장 등(이하 "인접시장 등"이라 한다)에게 의견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도로에 대해 인접 시 · 군 · 구가 도로명 변경을 신청한 시 · 군 · 구와 다른 도로명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인접 시장 등의 의견 수렴절차를 생략 할 수 있다.

③ 인접 시장 등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검토 의견을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 · 도지사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 등에 공고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

## 2.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 3. 도로구간 등의 설정 · 부여 · 변경 절차

⑤ 시 ·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시 · 도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구간 등의 설정 · 부여 · 변경사항을 결정하여 시장등과 인접 시장 등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제21조 제1항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⑥ 시장등은 제7조의2제1항 전단 또는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시 · 도지사에게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제7조의2제1항 전단 또는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⑦ 시 · 도지사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등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요청받은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1. 도로구간등의 설정 · 부여 · 변경에 관한 의견 제출

#### 2.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제출

⑧ 시 · 도지사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결정을 하기 전에 14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공보등에 공고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해당 시 · 도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구간등의 설정 · 부여 · 변경 사항을 결정하여 시장등과 인접시장등에게 통보하며, 그 내용을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제11조의3 (2개 이상의 시 · 도에 걸쳐 있는 도로에 대한 도로구간등의 설정 절차 등)** ① 시 · 도지사는 시장등으로부터 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도로가 2개 이상의 시 · 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2. 해당 시장등의 의견(제2항에 따른 인접 시·도의 시장등의 의견은 제외한다)
3. 시·도지사의 의견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도로를 관할하는 다른 시·도(이하 이 조에서 "인접 시·도"라 한다)의 시·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인접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의견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도로에 대해 인접 시·도가 도로명 변경을 신청한 시·도와 다른 도로명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인접 시·도지사의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인접 시·도지사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접 시장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검토 의견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 등에 공고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2.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3. 도로구간등의 설정·부여·변경 절차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구간등의 설정·부여·변경 사항을 결정하여 해당 시·도지사 및 시장등과 인접 시·도지사 및 인접 시장등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⑥ 시장등은 제7조의2제1항 전단 또는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시·도지사에게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제7조의2제1항 전단 또는 제7조의3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요청받은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도로구간등의 설정·부여·변경에 관한 의견 제출
2.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제출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결정을 하기 전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공보등에 공고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구간등의 설정·부여·변경 사항을 결정하여 해당 시·도지사 및 시장등과 인접 시·도지사 및 인접 시장등에게 통보하며, 그 내용을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